

01 작년('14년)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은 총 9개입니다.



0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- 농업인등에 해당하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
\*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-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\* 이전부터 생산한 자  
\* 노지포도 : '13. 5. 1(한·터키FTA), 밤 : '11. 7. 1(한·EU FTA), 그 외 품목 : '12. 3. 15(한·미 FTA)
-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·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(일부 위탁도 포함)
- 상기 9개 품목을 2014년에 생산·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
03 위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아래 서류를 갖추서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
-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 -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(생산사실 확인서, '14년도 판매 기록 등)
  -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(농협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 등)
  -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)

직불금·지원금 지급절차



01 작년('14년)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품목은 총 5개입니다.



0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등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-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
- 농업인등에 해당하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
\*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
- 해당 FTA 발효일\*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·토지·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
\* 노지포도 : '13. 5. 1(한·터키 FTA), 밤 : '11. 7. 1(한·EU FTA), 그 외 품목 : '12. 3. 15(한·미 FTA)
-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,000㎡ 이상인 자  
\* 닭고기의 경우 사육두수가 1,000마리 이상인 자

03 위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아래 서류를 갖추서 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.

-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(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증명서류(본인이 준비해야 함)
  - 철거·폐기하려는 사업장·토지·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 -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 (농협의 전산출력물·영수증, 택배영수증, 임대차 계약서, 농장주 확인서,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)

